

표 8 |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분류표

결과표 상 분류		【별표 12-2】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분류
야간작업		야간작업
소 음		소음
이상기압		고기압, 저기압
분 진	광물성	광물성 분진
	석 면	석 면
	그 밖의 분진	곡물분진, 면분진, 나무분진, 용접흄, 유리섬유
유기화합물		유기화합물(108종)
금 속	연	연
	수 은	수 은
	크 롬	크 롬
	카드뮴	카드뮴
	그 밖의 금속	금속류(19종)
산·알칼리·가스		산 및 알칼리류(8종), 가스 상태 물질류(14종)
진 동		진동
유해광선		방사선, 자외선, 적외선,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
기 타		영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물질(12종) :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, α-나프틸아민과 그 염, , 크롬산아연, o-톨리딘과 그 염, 디아니시딘과 그 염, 베릴륨,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, 크롬광, 휘발성 폴타르피치 (코크스 제조 또는 취급 업무), 황화니켈, 염화비닐, 벤조트리클로라이드 미네랄 오일미스트(광물성 오일)

(8) 질병유소견자현황(2쪽 기재)

(가) 결과표 2쪽(별지 제22호(2) 서식)의 질병분류에 의거 해당 질병자란에 직업경력별, 나이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.

- 일반질병(D₂), 직업병(D₁), 야간작업 질병(D_N)만을 집계하여야 한다.

- 일반질병유소견 항목(D₂)은 질병 소견 코드표(표 4)의 목표질환에 해당되는 경우, <표 4>에 의거하여 질병코드로 분류한다.

※ 질병 분류를 집계하는데 의의가 있으므로, 해당 건강진단 검사 항목만으로는 확진이 안 되어 실제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(제5차 개정)의 R-code(기타증상·징후와 임상검사의 이상소견)나 그 외 다른 코드로 분류함이 합당한 경우라 할지라도 <표 4>의 목표질환은 <표 4>의 권고에 따라 분류한다.

※ 일반질병유소견 항목(D₂) 중 <표 9>의 목표질환 이외의 질병 코드의 선택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(제5차 개정)의 질병분류 방식을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.

- 직업병(D₁) 및 야간작업 질병(D_N)은 <표 5>에 의거하여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질병코드로 분류한다.

(나) 질병유소견자현황은 건수로 기재한다.

- 1인이 2가지 이상의 다른 질병에 이환된 경우에는 해당 질병란에 각각 모두를 기재한다.

- 2가지 이상의 다른 질병이 동일 분류 코드로 잡힐 경우에는 별개 건으로 각각 집계한다.